

1. 개정이유

내연기관 자동차를 수소자동차로 변경하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한 튜닝 절차와 승인기준(총중량 증가 제한, 축간거리 연장 제한, 제작자가 동일한 원동기만 가능 등) 적용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수소차로 변경하는 튜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신기술 튜닝에 수소자동차로 변경하는 튜닝 추가(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)

내연기관 자동차를 수소자동차로 변경하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총중량 증가, 축간거리 연장, 원동기 변경 등이 필요하나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한 튜닝 승인기준 적용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수소차로 변경하는 튜닝도 전기차로 변경하는 튜닝과 동일하게 튜닝승인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튜닝승인이 가능한 신기술 튜닝에 추가

나. 전기자동차등으로 변경하는 튜닝작업을 할 수 있는 업종 추가(안 제20조)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에 튜닝을 하려는 자는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작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, 규정에는 전기자동차로 변경하는 튜닝작업을 정비업자만 명시하고 있어, 법률에 맞게 튜닝작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정비업자와 「자

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튜닝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
으로 명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“연료전지자동차”란 안전기준 제2조제58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를 말한다.

제3조 중 “전기자동차(제2조제8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”를 “전기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(이하 “전기자동차등”이라 한다.)”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전기자동차의 튜닝”을 “전기자동차등의 튜닝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전단 중 “전기자동차로 튜닝”을 “전기자동차등으로 튜닝작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튜닝하고자”를 “튜닝작업을 하고자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“전기자동차”를 각각 “전기자동차등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전기자동차를”을 “전기자동차등을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기자동차”를 “전기자동차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기자동차는”을 “전기자동차등은”으로 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기자동차”를 “전기자동차등으로”로, “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여야 하고”를 “소형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거나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제작자등으로서”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전기자동차”를 “전기자동차등으”로 한다.

제22조의 제목 “(전기자동차로의 튜닝 승인신청 등)”을 “(전기자동차등으로의 튜닝 승인신청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기자동차”를 “전기자동차등으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, 제3호,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“전기자동차”를 각각 “전기자동차등”으로 한다.

제23조 중 “전기자동차”를 “전기자동차등으”로 한다.

제24조제2항 중 “전기자동차”를 “전기자동차등으”로 한다.

제25조의 제목 “(전기차로의 튜닝 인력양성 교육실시)”를 “(전기자동차등으로의 튜닝 인력양성 교육실시)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및 제5호 중 “전기자동차”를 각각 “전기자동차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9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“연료전지자동차”란 안전기준 제2조제58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를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적용범위) 자동차의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과 <u>전기자동차(제2조제8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</u>의 튜닝기준 · 정비작업의 범위 ·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<u>제3장 전기자동차의 튜닝</u>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</p> <p><u>전기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(이하 “전기자동차등”이라 한다.)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<u>제3장 전기자동차등의 튜닝</u></p>
<p>제14조(구조 · 장치의 안전성확인 기술검토) ① <u>전기자동차로 튜닝을</u>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 자로부터 충중량의 변경 등에 따른 안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.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</p>	<p>제14조(구조 · 장치의 안전성확인 기술검토) ① <u>전기자동차등으로 튜닝작업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. -----</p>

<p>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<u>튜닝하고자</u> 하는 차종 별로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제15조(안전성확인 기술검토의 신청 등) ①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<u>전기자동차 튜닝</u> 안전성확인 기술 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략) 4. 튜닝한 <u>전기자동차</u>의 차명 및 형식 5. 튜닝한 <u>전기자동차</u>의 구성품 및 작동원리 6. (생략) ② ~ ⑤ (생략) <p>제16조(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의 인계 등)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서를 발급 받은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튜닝한 <u>전기자동차</u>를 성</p>	<p>----- -----. ② ----- ----- -- <u>튜닝작업을 하고자</u> ----- -----.</p> <p>제15조(안전성확인 기술검토의 신청 등) ① ----- ----- 전 <u>기자동차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전기자동차등</u> ----- ----- 5. ----- <u>전기자동차등</u> ----- ----- 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<p>제16조(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의 인계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기자동차등을</u> -</p>
---	---

<p>능시험대행자에 인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 <p>제17조(안전성확인 자동차의 구비 요건 등) ① 안전성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<u>전기자동차</u>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축전지제어기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입증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② 안전성확인을 위한 <u>전기자동차</u>는 다음 각 호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제20조(시설 및 인력기준) <u>전기자동차</u> 튜닝작업을 하려는 자는 규칙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<u>소형자동차</u> 정비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여 실제 튜닝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제21조(튜닝 작업 확인서의 발급)</p>	<p>----- 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안전성확인 자동차의 구비 요건 등) ① ----- ----- <u>전기자동차등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전기자동차등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시설 및 인력기준) <u>전기자동차등으로</u> ----- ----- ----- <u>소형자동차</u> <u>정비업으로</u>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거나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등으로서 ----- ----- 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1조(튜닝 작업 확인서의 발급)</p>
---	--

	<u>전기자동차로 투닝작업을 한 자는 투닝을 신청한 자에게 규칙 제56조제5항에 따라 투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/u>	<u>전기자동차등으-----</u> ----- ----- -----.
제22조(<u>전기자동차로의 투닝 승인 신청 등</u>)	① 규칙 제56조에 따라 <u>전기자동차</u> 투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투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투닝에 대한 검사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규칙 제73조 별표 15에서 정한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중 <u>전기자동차</u> 에 해당되는 사항 2. (생략) 3. <u>전기자동차</u> 의 장치 및 부품 등이 정상 작동되는지 여부 4. (생략) ③ 공단은 투닝검사를 완료한 <u>전기자동차</u> 에 대하여는 자동차 보험을 변경하여 가입해야 함을 투닝 승인 신청자에게 알려주어	제22조(<u>전기자동차등으로의 투닝 승인신청 등</u>) ① ----- -- <u>전기자동차등으로</u> ----- ----- -----.
	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	1. ----- ----- -- <u>전기자동차등</u> ----- --
	2. (현행과 같음) 3. <u>전기자동차등</u> ----- -----	2. (현행과 같음) 3. <u>전기자동차등</u> ----- -----
	4.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전기자동차등</u> ----- -----	4.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전기자동차등</u> ----- -----

야 한다.	-----.
<p>④ 튜닝 승인 신청을 한 자동차 또는 구조·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때부터 해당 차종의 안전성 확인 기술검토의 효력을 상실한다. 이 경우 공단은 검사를 부적합 처리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④ -----
1. (생략)	-----
<p>2. <u>전기자동차</u> 또는 구조·장치가 해당 차종의 안전성 확인을 받을 당시와 다른 경우</p>	-----
3. (생략)	-----
⑤ (생략)	-----
<p>제23조(튜닝 규정 준용) <u>전기자동</u> <u>차로의 튜닝 승인·정비·검사</u>에 대하여 제3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장의 규정을 준용 한다.</p>	제23조(튜닝 규정 준용) <u>전기자동</u> <u>차등으</u> -----
제24조(튜닝에 대한 업무규정 등)	-----
① (생략)	-----
<p>② <u>전기자동차로 튜닝하기 위한</u> <u>안전성확인 및 구조변경검사 업</u> <u>무를 하는 자는 세부절차가 포</u></p>	-----

<p>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.</p> <p>제25조(<u>전기차로의 투닝 인력양성 교육실시</u>) (생 략)</p>	<p>----- -----.</p> <p>제25조(<u>전기자동차등으로의 투닝 인력양성 교육실시</u>) (현행과 같 음)</p>
--	--